

의안번호	2210419
의 회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1.
추계번호	25A282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제12조의9 신설(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¹⁾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, 시설복구비 지원,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(제1항) 천재지변, 화재, 산불, 홍수,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(제2항)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제12조의9 신설(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①경영안정자금, ②시설복구비, ③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,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④손실보상²⁾을 할 수 있도록 규정
- 개정안에 따른 지원 사항 중 경영안정자금, 시설복구비, 세제 지원의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관련 재정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, 기존 재정 지원의 근거를 이 법에 명확히 하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2025.5.27. 일부개정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5호의 2³⁾는 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의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
 - 2013.8.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 제6호⁴⁾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⁵⁾

2) 개정안에 따른 손실보상은 “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상 손실보상*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, 여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상 피해 상당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검토함

* 행정상 손실보상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응하기 위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사인에게 조절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(대판 2013.6.14., 2010다9658)

3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법률 제20961호, 2025.5.27. 일부개정, 2025.11.28. 시행)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(단서 생략) 5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
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
4) 각주 3) 참고

5) 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의 경우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,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

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(...)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...)를 할 수 있다.

- 이에 따라 현재 울산·경북·경남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복구비, 긴급경영안정자금(융자·보증),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등 재정 지원과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지방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
- * [참고자료] 울산·경북·경남 대형산불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및 지원 현황

□ 한편, 손실보상의 경우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내용이나, 개정안에서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“직접적인 피해”의 범위를 알 수 없고 향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수나 피해 건수, 지원 단가 등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안 제12조의9⁶⁾에서는 “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”에 대하여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세부적인 손실보상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없음
- 또한,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특성상 발생 주기 및 빈도를 가정하기 어려우며, 발생 장소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의 수와 피해액 또한 상이할 것이므로 추계에 필요한 대상자 및 지원 단가 등을 가정하기 곤란

□ 이에 개정안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산불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
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(지방세 감면율·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·세목·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)하는 지방세 감면

제92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) ④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(부동산·차량·건설기계·선박·항공기를 말하며,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.

6) 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안 제12조의9(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) ② 천재지변, 화재, 산불, 홍수,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울산·경북·경남 대형산불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및 지원 현황

< 총괄 피해 현황 >

구분	인명 피해(명)		재산 피해(건)	
	신고	확인	신고	확인
중소기업	0	0	53	44
소상공인	0	0	1,033	848
합계	0	0	1,086	892

주: 2025.4.15. 24:00 기준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< 지방자치단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현황 >

구분	계	경북					경남		울산
		안동시	의성군	영덕군	영양군	청송군	산청군	하동군	
중소기업	36	17	5	12	0	2	0	0	0
소상공인	435	140	64	97	22	110	0	2	0
합계	471	157	69	109	22	112	0	2	0

주: 2025.4.15. 24:00 기준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< 재정 지원 사항 >

직접 지원 (지원금)	구분	소관	지원대상	지원단가	부담률
	재해 복구	중부	건축비, 시설장비, 원자재 등 산불피해 복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지원	중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	국비 100%
		환경부 해부	오염물·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 지원	실제 처리 비용	국비 100%
	재난 지원	중부	소상공인 영업장 전파·반파·유실 및 주요시설 등 파손되어 영업 불가한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	업체당 1,000만원 (재해구호기금 200만원 포함)	국비 70% 지방 30%

간접 지원 (융자 보증)	구분	소관	지원대상	지원항목	내용	비고
	융자	중부	재해소상공인확인증 발급 소상공인	긴급경영안정자금	①대출한도: 3억원 ②대출금리: (대리) 1.4% 고정, (직접) 1.5% 고정 ③대출기한: 10년(거치·분할 각 5년)	소상공인 사업진흥 공단
				대환대출	①대출한도: 5천만원 ②대출금리 4.5% 고정금리 ③대출기한: 10년 (10년 분할 또는 2년 거치 8년 분할)	
			재해소상공인확인증 미발급 소상공인 중 매출액 10%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	일시적경영애로자금	①대출한도: 5천만원 ②대출금리: 2.79%('25.2분기) ③대출기한: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)	
	보증	중부	재해소상공인확인증 발급 소상공인	재해특례보증	①보증한도: 3억원 ②특례보증료율 0.1% ③특례보증비율: 100%	지역신용 보증재단
	융자	중부	재해소상공인확인증 발급 중소기업	긴급경영안정자금	①대출한도: 10억원(3년간 15억원 이내), ②대출금리: 1.5% 고정금리 ③대출기한: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)	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
	보증	중부	재해소상공인확인증 발급 소상공인	재해특례보증	①보증한도 (운전) 5억원 (시설) 소요범위 내 ②특례보증료율: 0.1% ③특례보증비율: 90%	기술보증 기금

규제 완화	구분	소관	지원대상	지원항목	내용	비고
	제조	중부	직접생산	직접생산 기준적용 예외 특례	①핵심부품 구매 및 타 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②유효기간 만료 유예 실시(최대 2년) ③직접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 면제(1년) ④직접생산 확인 수수료(20만원) 면제(최대 2년)	한국 중소기업 유통원

기존 정책 확대 적용	구분	소관	지원대상	지원항목	내용	비고
	폐업 지원	중부	산불 피해 소상공인 중 폐업희망자	희망리턴패키지 (원스톱폐업지원)	①(사업정리) 폐업 관련사항(폐업절차·세무상담 등) 전문가와 1:1 컨설팅 지원 ②(점포철거) 사업장 임차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·원상복구 비용 지원 * 최대 400만원 한도 증액(부가세 제외)	소상공인 사업진흥 공단
	노란 우산 공제금	중부	노란우산공제 가입자	공제금 지급	사회재난*(특별재난지역 선포), 사망, 폐업 등 공제금 지급 * 피해사실확인서(지자체 발급) 또는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 제출	중소기업 중앙회

자료: 중소기업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< 세제 지원 사항 >

국세									
○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- 대상: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- 공통 지원 사항: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※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가능 - 세목별 지원 사항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인세</td><td>·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※ 당초 3.31. → 연장 6.30.</td></tr> <tr> <td>부가가치세</td><td>·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하지 않음 ·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</td></tr> <tr> <td>종합소득세</td><td>·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내용	법인세	·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※ 당초 3.31. → 연장 6.30.	부가가치세	·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하지 않음 ·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	종합소득세	·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
구분	내용								
법인세	·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※ 당초 3.31. → 연장 6.30.								
부가가치세	·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하지 않음 ·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								
종합소득세	·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								
○ 압류 및 매각 유예 - 특별재난지역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									
지방세									
○ 산불로 주택, 축사,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·등록면허세 면제 ○ 자동차 멸실·파손 시 자동차세 면제 ○ 사망자·유족에 대해 2025년에 과세되는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 면제 ○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·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※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○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※ 당초 4.30. → 연장 7.31. ○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1년 범위에서 유예 가능 ○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 연기 신청 가능									

자료: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<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 >

구분	정책자금(융자·보증)					사업정리 건설팅	노란우산 공제
	합계	중진공	소진공	지신보	기보		
지원 실적	521건, 1,074억원	21건, 120억원	245건, 476억원	241건, 461억원	7건, 17억원	3건	4건

주: 2025.6.30. 24:00 기준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< 소상공인 생계비 등 지원 실적 >

구분	직접지원			
	합계	소상공인 생계비 ¹⁾	중소기업·소상공인 철거비	공장등 폐기물 처리비
지원 실적 (소관)	198.3억원	67.5억원 (행정안전부)	97.8억원 (행정안전부)	33.0억원 (행정안전부)

주: 1)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→ 1,000만원(재해구호기금 200만원 포함)

1. 2025.5.2. 24:00 기준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